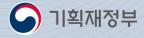
국고보조금 사용 설명서

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부정수급 관리까지



국고보조금 사용 설명서

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부정수급 관리까지

Contents

이 보조사업자 선정	1
02 보조금 교부	2
03 사업수행	3
04 보조사업 정산	5
05 보조사업비의 이월	7
06 사후관리	9
07 부정수급 관리	12

국고보조금 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(법)
-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(지침)
- 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
-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
-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령)
-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
- ⑤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

보조사업자 선정

법 제16조~17조, 지침 제13~15조

▮ 고려사항



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



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



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



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

민간 보조사업

- 1 재무안정성
- 2 자부담 능력
- ③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
- 4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
- 5 사업능력
- 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

지자체 집행사업

- 지방비부담가능성
- ②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
- ③ 부지확보여부 등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

▮ 선정절차

『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』심의를 거친 공모방식이 원칙. '공모 외 방식'은 필요시 심의



▮ 확인사항

▶ 중앙관서의 장(상위보조사업자)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 선정시 보조금통합관리망(이하 'e나라도움')을 통해 점검



- <u>공모 외 방식의 경우에도 필요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^{추가}를 거칠 수 있습니다.(지침 제15조제1항)</u>
-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, 자부담 능력 뿐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^{추가} 및 <u>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^{추가}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</u> (지침 제13조제1항)
-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·점검^{재량—의무}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14조의2제1항)

보조금 교부

법 제18조, 지침 제16~17조

▮ 검토사항

▶ 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



보조사업

계획의

구체성



실현 가능성



지방비

부담능력

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



연내 집행 가능성



이월금 보유현황 등

▮ 교부조건

▶ 중앙관서의 장(상위 보조사업자)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등이 가능함을 명시



▮교부방법

▶ 중앙관서의 장(상위 보조사업자)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



1차 교부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 후 추가 교부 결정



정산지연, 정보공시 불이행 시 삭감 교부

⊋: **'24년부터 달라집니다**.

•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①부정수급, ②목적외사용, ③법령 또는 처분 위반, ④전제 조건 미충족, ⑤중복수급 등의 행위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추가 명령 등이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16조제1항)

() 3 사업수행

집행점검

법 제25~26조 · 제36조, 지침 제32~33조

수행사항점검

▶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파악

사업수행 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(상위보조사업자)에게 보고



조사결과 사후조치

- 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, 강제징수, 제재부가금 부과, 수행 제한 등
- ②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즉시 e나라도움에 등록
- ③ 조사결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

l e나라도움을 통한점검

- ▶ 모든 상위보조사업자 및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교부한 보조금 관리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월 1회 점검
- ① (하위)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
- ②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
- ③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e호조와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

▮ 보조사업점검평가단

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고, 점검실적을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계 야

지침 제21조

▮ 계약관리

▶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 관리



▮ 계약체결

- ▶ 다음 계약을 체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는 ①조달청장에게 위탁 또는②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또는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이용
- 1 2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
-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(전문공사는 제외)로 2억원 초과
-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
-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초과

▮ 계약감독

쪼개기 계약 방지



▶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

내부 거래 방지



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

≂^{):} **'24년부터 달라집니다**.

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여러건으로 나누어 계약하거나, 보조사업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부정한 계약이 없도록 <u>관리·감독신설</u>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21조제7,8항)

() / 보조사업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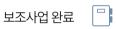
실적보고

법 제27조, 령 제12조, 지침 제26~27조

Ⅰ 내용▶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명확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 제출



▮기 한 ╟다음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(지자체는 3개월)



사업폐지 승인



회계연도 종료



- * 제출 지연시 교부금 삭감
- * 3개월 이상: ~10% 6개월 이상: ~20% 12개월 이상: ~50%

실적보고서 심사 및 금액 확정

법 제28~29조, 지침 제18조,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

- Ⅰ내 용
- ▶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한 경우 보조금 금액 확정
- * 필요시 현장조사 * 부적합 시 시정명령
- | 보조금사용 증빙자료 제출방법

5

- ①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·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,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은 e나라도움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
- ②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e나라도움에 전자적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
- ③ (예외) 교통,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① ②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

(**24년부터 달라집니다**.

• 보조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,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^{신설}됩니다. (지침 제18조제1~3항,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제1,3호)



일아두기

- 중앙관서장의 징수요청에 따라 국고(한국은행)에 반납까지 완료되어야 보조사업 정산 단계의 전 과정이 완료되는 것으로, 위의 과정을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반납금액이 징수되지 않는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.
- [절차 미숙지] 최종 국고수납까지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
- [수납 대기] 미정산 중인 다른 사업과 함께 수납하려고 지연(대기)되는 경우
- [시스템 미사용] 사업관리, 사업수행 등에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
- [담당 변경] 담당자가 바뀌어 지난연도의 정산·수납상황을 모르는 경우

드 보조사업비의 이월

지친 제25조

| 워 칙 ▶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불가

예외적 이월 사유

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했으나 지출 못한 경비 및 그 부대경비

- ②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, 재해복구 경비, 입찰공고 후 장기간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(재이월 사유)
- ③ 그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





▮ 절차·기한



절 차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필요

기 한 회계연도 말



🔵 알아두기

·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은 '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, 재해복구 경비, 입찰공고 후 장기간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(지침 제25조제2항제2호)'로 이월한 사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<참고 > 세출예산의 이월

국가재정법 제48조, 시행령 제20조

▮ 워 칙 ▶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불가. 예외적으로 이월 가능



▮ 이월사유



● 명시이월비



○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했으나 지출 못한 경비 및 그 부대경비(재이월 불가)



■ ■ ○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,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, 계약법에 따라 공고된 공사, 재해복구사업)



□ ◇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(보상절차 착수 또는 진행중인 경비,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간접보상비로 감정평가 계약 체결 또는 진행중인 경비,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 경비)



경상적 성격의 경비(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· 운영 경비, 예산의 15% 한도)



(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 가능)

▮ 절

▶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

정보공시

법 제26조의10, 령 제11조의2,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~6조

- ┃대 상
- ▶ 같은 회계연도 중 모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(지자체는 제외)



- Ⅰ항목
- 1 보조금교부신청서
- 4 정산보고서 검증결과
- 7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

- ② 수입·지출내역 ③ 정산보고서
- 6 회계감사보고서
- ⑤ 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⑧ 중요재산

- l기 한
-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
- * 시정명령(공시지연시점 및 허위공시 인지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) 불응 횟수에 따라 교부금 삭감 (1회: ~10%, 2회: ~20%, 3회: ~50%)

≂^{):} '24년부터 달라집니다.

• 시청명령 시점을 공시지연시점 및 허위공시 인지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산철로 구체화했습니다. (정보공시 세부기준 제 5,6조)

정산보고서 검증

9

법 제27조, 령 제12조의2,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9조,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~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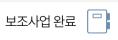
■ 대 상 하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 보조사업 (지자체는 제외)



▮ 내 용 ▶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첨부하는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 제출



Ⅰ기 한 마음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



사업폐지 승인



회계연도 종료



*부득이한 경우 2개월 연장 가능

회계감사 보고서 제출

법 제27조의2, 령 제12조의3,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4조,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~6조

▮대 상

▶같은 회계연도 중 모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(지자체는 제외)



▮ 내용·기한

내용



기 한



▶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

▶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

회계감사 보고서 감리

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

l내 용

▶ 중앙관서의 장은 ①표본추출, ②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 진행



☆: '24년부터 달라집니다.

• 중앙관서의 장은 ①<u>표본추출 또는 ②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하는 경우</u> <u>의무적으로 감리를 진행재량</u>—의무하여야 합니다. (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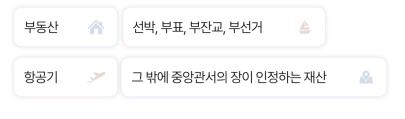
🔘 알아두기

- 정보공시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별 금액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여러 중앙기관에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(국비) 총액 기준입니다.
- 정산보고서 검증은 사업별 국고보조금(국비)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.

10

▮ 취득보고

▶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시점부터 15일 이내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



Ⅰ 변동보고

▶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/12월 변동상황 보고

▮ 처분제한

▶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



* 위반시 반환 명령 ①중요재산 취득 금액, ②효용가치 증가액, ③양도·담보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금액

▮공 시

▶ 중앙관서의 장(지자체 장)은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에 공시

공시기한

중앙관서의 장(지자체 장)이 취득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, 변동 보고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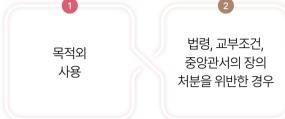


○ 7 부정수급 관리

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

법 제19조 · 제30~32조, 지침 제44~45조

▮ 취소사유





▮ 취소통보

교부취소 결정시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보,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통보



▮ 반환대상

▶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 및 발생이자



▮ 일시정지 등

▶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,미교부 다른 보조금과 상계



☆ : '24년부터 달라집니다.

• <u>부정수급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산설</u>할 수 있습니다. (지침 제44조제2항제4호)

② 알아두기

- 부정 및 거짓 의도가 없는 단순 과오수급 역시 교부취소 및 반환 대상입니다. -(사례) 가족간거래 금지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사업에 대해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

법 제33조, 지침 제45조

3

▮ 환수사유

거짓 신청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2

목적외 사용

보조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한 경우

▮ 환수대상

▶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

▮ 지급제한

▶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 제한을 명(중앙관서의 장)



▶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 제한(보조사업자)



⊋[∶] '24년부터 달라집니다.

• 부정수급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^{신설}할 수 있습니다. (지침 제44조제2항제4호)

🔘 알아두기

- 부정 및 거짓 의도가 없는 단순 과오수급 역시 교부취소 및 반환 대상입니다.
-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재부가금 및 가산금

법 제33조의2, 지침 제44~45조

- *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사항
- ▮부가대상

▶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명받은 보조사업자 등



▮ 제재부가금

▶ 부정수급 등의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최대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



▮가 산 금

▶ 제재부가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5% 이내에서 가산금 징수



🔘 알아두기

•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결정 시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▮징수대상 ▶ 미반환금, 제재부가금, 가산금 ▶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

l 방 법

강제징수

「지방행정 제재 · 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



법 제33조의3

*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사항

▮대 상

보조사업자



▶ 다음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

거짓 신청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(1회이상)

목적외 사용 (2회이상) 법령, 교부조건,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(3회이상)

보조금수령자



▶ 다음 사유로 반환 명령

거짓 신청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1회이상)

목적외 사용 (2회이상) 보조금 지급요건 미충족(3회이상)

계약업체



▶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 과정에서 부정수급 관련 사실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

| 통 보

보조사업 수행 배제가 결정된 경우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

I 등록·보고

▶ 수행 배제 개시일 전까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

🔘 알아두기

- · 수행배제 처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로부터 통보(공문 및 e나라도움 등록) 받은 각 중앙관서(총괄부서)는 사업부서에 신속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→ 통보받은 날로부터 해당 수행배제 보조사업자/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것을 안내

* 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사항

Ⅰ대 상

명단공표

공시지연 시점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명령,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

수행배제 보조사업자

교부제한 보조금수령자

▮ 공표내용

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성명·상호, 나이 및 주소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나이·주소 및 법인의 명칭·주소)



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내용



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



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

▮방 법

▶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



② 알아두기

• 명단공표 결정 시 e나라도움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포상금 지급

법 제39조의2, 령 제18조, 지침 제44~45조,제49조

*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사항

▮지급대상

▶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



▮지급기준

▶ 부정수급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

* 신고인의 기여도에 따라 20퍼센트까지 감액하거나,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 가능



┃지급결정

중앙관서의 장은 신고,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*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의

▮지급기한

▶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


⊋: **'24년부터 달라집니다**.

• 각 중앙관서는 포상급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^{신설}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49조제6항)

🔘 알아두기

- 신고포상금결정 시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포상금 등록시 각 중앙관서의 dBrain+을 통한 신고포상금 전체 지급내역을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하여,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한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가능

부정수급 점검결과 등록

지침 제45조

I 등록내용



건수 및 금액





명단

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



▮ 등록기한

▶ 상반기 3.31일, 하반기 9.30일까지 연2회 e나라도움에 등록 (명단공표는 3.31일까지 연1회)



l보 고

▶ 점검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



≂^{):} '24년부터 달라집니다.

•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 점검결과에 대해 <u>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,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</u> <u>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 입력등록주기확대(연1회 -연2회)</u>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45조제1항)

🔘 알아두기

-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e나라도움 상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환수결정 금액 및 환수실적 금액 입력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
- 기존 등록된 부정수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가 환수되었을 때, 환수실적을 지속 업데이트

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침제45조의2



。⊋: **'24년부터 달라집니다.**

• <u>기재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가능산설</u>합니다. (지침 제45조의2제6항)

